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 : 하이 뉴 트렌드 리더 증권 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 시행일 : 2011년 1월 6일

3. 변경사유

- 가.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 : “송이진”에서 “곽재우”로 변경
- 나.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다. 기준일 현재 운용실적 등 업데이트

4. 변경 주요내용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45조 (투자신탁의 해지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보고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생략)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② 내지 ③ (생략)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____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보고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____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
부칙	< 신 설 >	이 신탁계약은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 다.

나. 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갱신	-	- 책임투자운용인력(운용현황) -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재무정보 -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-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내역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가>	2011-01-04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계약 변경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) -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(송이진→곽재우)
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책임투자운용인력 나. 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변경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이진 : 2010-01-11 ~ 현재 <추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이진 : 2010-01-11 ~ 2011-01-05 - 곽재우 : 2011-01-06 ~ 현재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 해지(해산)의 위험	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, 투자회사가 _____ 있습니다.	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, 투자회사가 _____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	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, 채권평가회사,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_____ 있습니다.	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, 채권평가회사,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_____ 있습니다.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	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	<추가>	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

		<p>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지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지구가 아닌 집합투자지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지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
--	--	--

끝.